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대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등 인원배정 허용 〉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53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용원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30.
3. 회부연월일 : 2026. 5.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연구 인프라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여 국가 전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첨단 산업의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현행법 제36조제4항에서는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에서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인원배정 중 국가첨단전략사업 분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배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u>

⑤ ·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승계·선정취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편입 및 서약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은 제외한다) 2.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3.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4.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체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⑧ -----제7항----- ----- ----- ----- -----.
--	--

☐ 현행법 제36조제1항¹⁾에서는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연구기관·기

1)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서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전 문 연 구 요원 복무 연구기관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다만, 연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가목 외의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 업 기 능 요원 복무 기간 산 업 체	1. 공업 분야: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 2. 에너지산업 분야: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3. 광업 분야: 광물(석탄은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4. 건설업 분야: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5. 수산업 분야: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6. 해운업 분야: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서는 대기업,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및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등에 대해서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병역법 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 또는 시·군·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기업
2.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3.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4.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체

☐ 이 중 대기업에 대한 인원배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1997년부터,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제외되어 오고 있음.

(산업기능요원) 공업분야는 '97년부터, 광업·에너지업·건설업 분야는 '01년부터 대기업 제외 (전문연구요원) '09년 대기업 배정비율 감축 및 '13년 대기업 인원배정 제외 등

☐ 이에 따라 대규모 자본 투자와 연구 인프라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의 유입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여 국가 전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의 인원배정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인원배정 중 국가첨단전략사업 분야²⁾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배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사업인 국가첨단전략사업 분야에서는 우수 연구인력과 산업기술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가 경쟁력 유지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급망 및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통해 상호 연계되어 있는 산업인 만큼, 대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를 인원배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은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병역자원 부족이 심화되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되는 총 인원이 감소³⁾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복지비용 등의 상당한 격차로 국가첨단전략산업

2)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3) <병역특례 배정인원 감축 현황>

분야의 대기업에 대한 정원 배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속시킬 우려가 있음.

- * 대-중소 임금비중(%): ('20) 52.8 → ('25) 53.1
- * 대-중소 복지비용 격차(천원): ('20) 194.3 → ('24) 299.7,
- * 대-중소 미충원율 격차(%p): ('20) 5.3 → ('24) 7.3

둘째, 현행 대기업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은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특정 산업 분야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경우 향후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예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산업환경과 국가정책에 따라 대상 분야가 변경·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병역자원 배정의 예외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셋째, 대기업의 인원배정 제한 규정은 현재 시행령에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필요시 현행 규정으로도 대기업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는 현행 규정 하에서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며, 다수의 반도체 업체 등이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인원을 배정⁴⁾받고 있고, 반도체 등 중점

⁴⁾'19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에서 병역자원 감소를 고려하여 병역특례 배정인원 감축
(산업기능요원: 4,000명 → 3,200명 / 전문연구요원: 2,500명 → 2,200명)

정책육성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배정규모 역시 지속 확대 중임.

* 중점정책육성분야 별도 배정인원 : ('23년) 180명 → ('24년) 200명 → ('25년) 300명
--

- ☐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및 특혜 논란,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보충역을 지속 감축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의 전략산업 분야 정원 배정 허용은 대기업으로의 편입 쏠림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 법무부는 개정안의 ‘복무관리 부실업체’ 및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처분의 기준이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142개 업체가 기선정되어 인원 배정 중

문 의 처
02)6788-5308

※ 참고자료

○ 전문연구요원 대기업 배정 제한 연혁

• 대기업 對 중소기업 인원배정 비율(4:6→2:8) 변경('09년)

※ '08.6.11. 대통령 주관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

- 대기업에 비해 연구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술창업 활성화 등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지원정책으로 추진

• 전문연구요원(현역자원)의 대기업 배정 중단('13년)

※ '11.4.29. 대통령 주관 제85차 국민경제대책회의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확대를 위해 '13년부터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전문연구요원 배정
- * 단, 보충역자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중소·중견기업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 전직은 제한하지 않음

• 대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중단('16년)

• 전문연구요원(현역자원)의 복무 중 대기업 전직 제한('21년)

※ '19.11.21. 국무총리 주관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그간 중소·중견기업에서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 전직이 가능했으나, 대기업 전직을 차단하여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 차단

• 전문연구요원(보충역자원)의 대기업 편입 제한('22년)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현황

(단위: 명)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전문 연구 요원	박사 과정	1,000	1,000	1,000	1,050	1,100	1,100
	석사 과정	1,500	1,400	1,300	1,250	1,200	1,200
	중 소 · 중 견 기 업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출연연 등	300	200	100	50	0	0
산업기능요원		4,000	3,600	3,200	3,200	3,200	3,200